

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나. 표준투자권유준칙

- 다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
- 라.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

1) 2016/5/9 개정, 2016/5/9 시행 사항

가) 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의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 일부 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(금감원) 서식 변경에 따라, ‘영업보고서’ 서식, ‘투자은행부문’ 현황 보고 주기 및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영업보고서 관련 주요 서식 개정사항

- 업무보고서의 서식 신설·폐지·변경사항을 반영
 - (신설)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현황, 수수료, 계열사 현황
 - (폐지) 회사 일반현황 중 일부사항, 의결권현황, 최대주주 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(사업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 등)
 - (변경) 서식 및 작성방법 등

투자은행부문 관련 주요 개정사항

- 업무보고서의 개정사항을 반영
 - (보고주기) 월단위 → 분기단위
 - (개정) 일부 보고서 폐지, 서식 및 작성요령 변경

*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

2) 2016/5/10 개정, 2016/5/10 시행 사항

가) 개정 이유

- 2016년부터 증권·선물사 재무건전성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순자본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세칙에 반영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- 증권·선물사(1종 금융투자업자)의 경우 재무건전성지표로 순자본비율을 제출토록 하고, 관련 서식 신설 (제56조 제3항 제5호의2 및 별지 제40-1호)
 - 자산운용사(2종 금융투자업자)도 영업용순자본비율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, 영업용순자본비율 공시 대상을 투자일임·자문·신탁사(3종 금융투자업자)로 한정 (제56조 제3항 제5호 및 별지 제40호)
 -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 (별지 제40호)
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

3) 2016/5/17 개정, 2016/7/1 시행 사항

가) 개정 이유

- 금융감독원은 투자위험등급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위험도간의 괴리를 줄이려는 취지로, 위험 등급분류 기준 및 등급 수 변경을 위한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을 개정함(2016/1/26 개정, 2016/7/1 시행)
 - (등급분류 기준 변경) 투자예정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해당 펀드의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
 - (등급 세분화) 펀드 위험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
 - (등급표기 방식 변경) 투자설명서의 위험등급을 해당 등급만 표기하는 방식에서 전체 등급 중 해당 등급을 강조(음영처리)하는 방식으로 변경

- 이에 따라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 개정내용을 금융투자협회의 '집합투자기구 분류' 위험등급에 반영하기 위함



나) 주요 내용

- '집합투자기구 분류' 14차 분류(위험등급)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(별지 제15호)
 - (위험등급) 매우 높은 위험, 높은 위험, 다소 높은 위험, 보통 위험, 낮은 위험, 매우 낮은 위험의 6단계로 변경

나. 「표준투자권유준칙」 개정 (2016/5/19 개정, 2016/5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조사의무 완화를 위한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(2016/4/14 시행)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금전신탁계약시 전문투자자에 대한 조사의무 면제
 -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유형화를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의무를 생략하고, 자신의 투자유형을 선택 가능
 - 조사의무사항 : 투자자 연령, 투자위험감수능력, 투자목적, 소득수준, 금융자산 비중 등
 - 매분기 1회 이상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 확인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실시

- 고객정보(연락처) 현재화를 위한 설명
 -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객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회사로 통보하도록 직원 설명 유도
 - 고객의 투자성향 판단 시 활용되는 투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도록 직원이 기 안내 중임 (9. 투자정보의 유효기간 중 2))



다. 「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」 개정 (2016/5/26 개정, 2016/5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증권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경영허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, 내부통제 구축방안을 표준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
 - 2015년 11월 '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'에서 증권회사에 사모펀드운용업 경영(In-house)을 허용하기로 발표

2) 주요 내용

- 과당매매 방지 (제98조 제1호 및 제100조 제1호, 제2호)
 - 총 거래대금 중 자사 또는 특정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금액 비중을 50%이하로 제한(프라임브로커 제외)하고
 - 운용성과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매매회전율 및 위탁 매매수수료 지급내역을 공개
- 자사 및 계열사와의 거래제한 (제98조 제2호 및 제99조 제4호)
 - 계열사인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체결 금지 및 고유재산이 투자된 펀드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관련 규제 준수 여부 점검 의무화
 - 자사를 프라임브로커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당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
- 수수료 과다지급 예방 (제98조 제3호 및 제100조 제2호)
 - 자사에 지급하는 리서치 및 위탁매매 관련 수수료율을 타사에 지급하는 동종 수수료율의 상한 이하로 제한하고
 - 운용성과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수수료 지급내역 고지
- 내부통제 강화 (제98조 제4호 및 제99조 제3호, 제5호)
 -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 또는 전담인력의 보유를 의무화하고,



- 운용인력에 대해 집합투자재산 편입종목에 대한 매매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또는 사전 승인제도 운영
- PEF를 통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%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수 제한

차이니즈월 강화 (제99조 제1호 및 제2호)

- 집합투자업과 정보차단벽 설치필요 부문 간에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 사용을 의무화하고
 - 집합투자업과 기업금융업무간 정보 교류시 이메일, 전화 녹취 등으로 저장,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

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(제100조)

- 해당펀드의 매매회전율, 조사분석자료 공표종목 중 매수·매도 상위종목,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운용성과보고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고지

라. 「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」 개정 (2016/5/20 개정, 2016/5/2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조사의무 완화를 위한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(2016/4/14 시행)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문투자자에 대한 비지정 특정금전신탁의 분기별 재무상태 파악의무를 면제하고,
-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유형화를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의무를 생략하고,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
 - 투자자의 연령, 투자위험감수능력, 투자목적, 소득수준, 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, 그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